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어항
지정 기준 보완〉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213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어항 지정 기준 보완	2
IV. 입법의 재정영향	8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1. 21.

3.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등을 국가어항으로 정의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어항은 단순한 항구 기능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어선 등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시설을 갖춘 어촌지역의 경제 중심지이자 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이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이로 인해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륙 어촌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곧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어항 지정 기준 보완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 ② (생략) <u><신 설></u> ③ ~ ⑦ (생략)	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u>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국가어항¹⁾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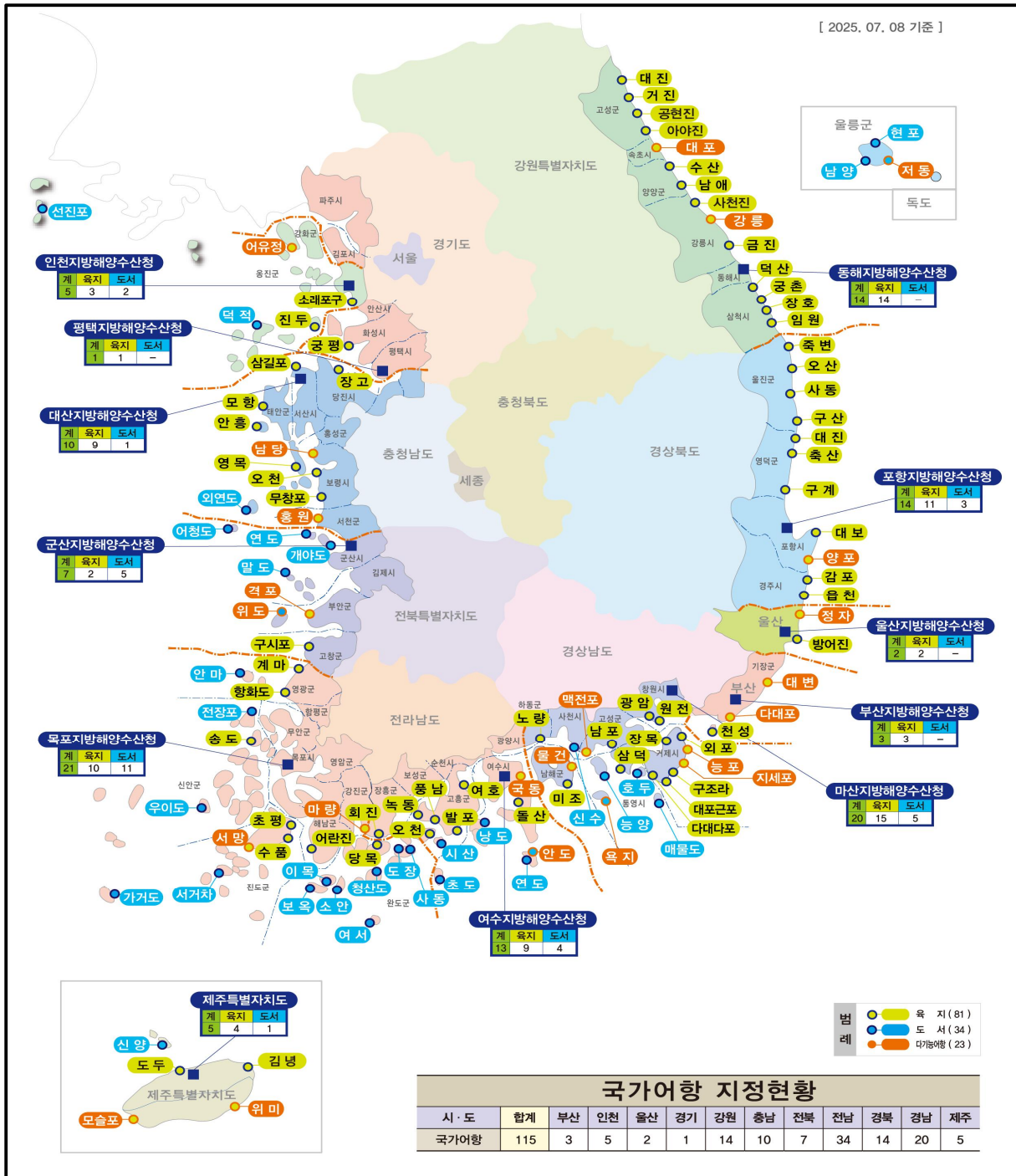
1) 「어촌·어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하고 국가어항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가어항 지정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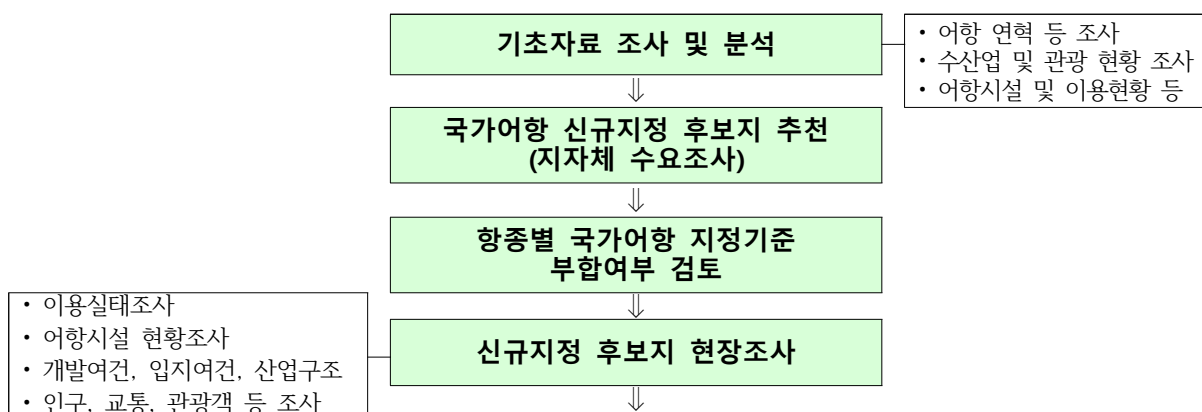


-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국가어항은 국가가 직접 개발·관리하는 어항으로 어선 정박 및 피항, 어획물 양륙 등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어업인의 생활 기반임과 동시에 위판장 및 수산물 가공시설 등의 수산물 유통거점, 어촌지역의 경제·관광 중심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지정된 115개의 국가어항은 모두 해안에 인접해 있으며 내수면에 지정된 국가어항은 전무한 실정임.

- 현재 추진 중인 국가어항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선정된 국가어항 신규 예비대상항 10개항²⁾의 기본설계를 2026년부터 실시하여 신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³⁾이며, 내수면의 경우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국가어항 신규지정 예비대상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⁴⁾ 추진 중으로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초기단계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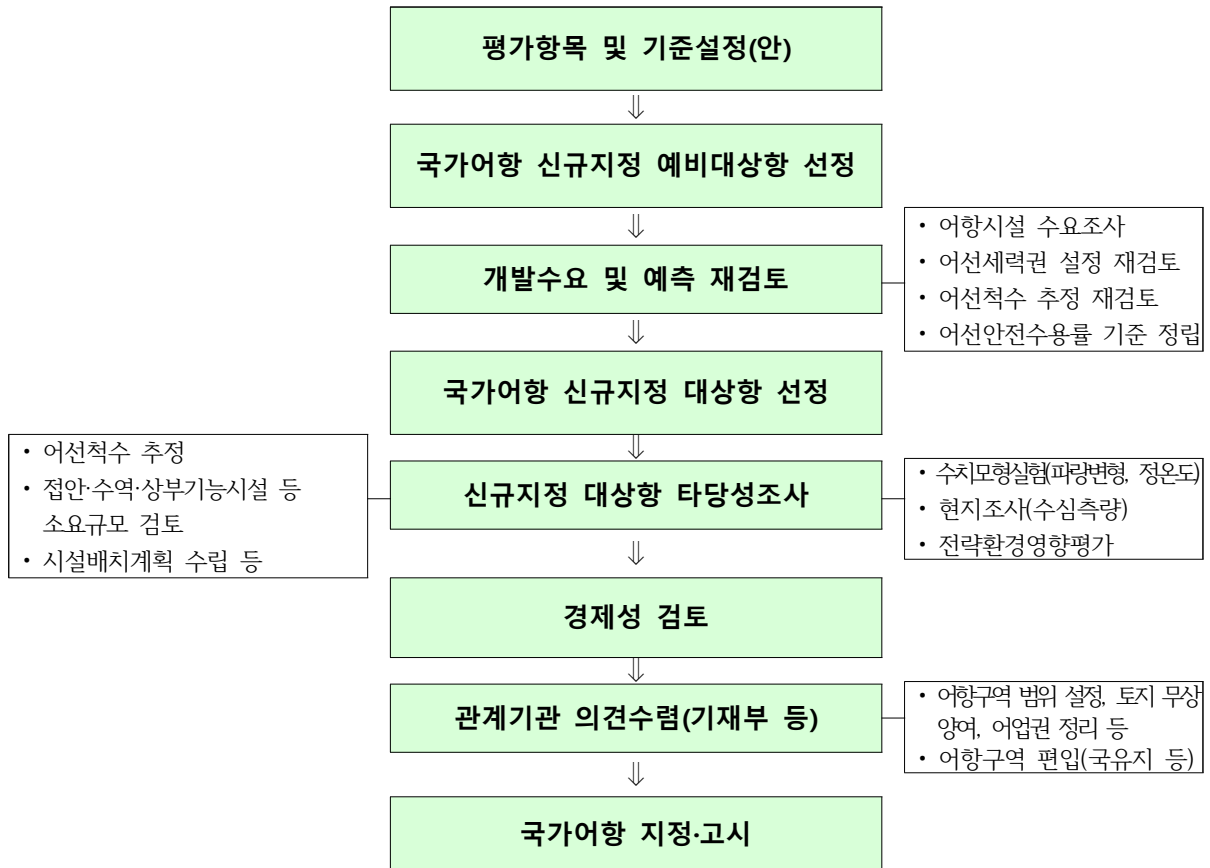
< 국가어항 신규지정 절차 >



2) 삽진항(전남 목포), 울포항(전남 보성), 가력항(전북 부안), 대명항(경기 김포), 북신항(경남 통영), 생깁항(전남 신안), 방아머리항(경기 안산), 전곡·제부항(경기 화성), 하리항(부산 영도), 유계항(경남 거제)

3)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5.12.)

4) 「내수면 영향기초조사 및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2025년 실시)



자료 : 해양수산부

□ 내륙 어촌의 하천 및 호소는 강수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류시설 및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미흡하고, 어업활동으로 인한 수산물 가공 인프라도 부족하여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어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저해와 함께 국가 어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⁵⁾,

5)박상우·류정곤·이상철·이호림·이상규,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2017.10.) p.150

강마을에 인접해 있는 하천 및 호소는 강수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류시설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따라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수심의 변동이 큰 저수지나 댐의 경우는 낮아진 수심으로 인하여 배의 접안이 불가능하여 어업활동을 포기하고 농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활동으로 인한 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공시설이 있더라도 소규모 영세한 가공으로 한정되어 대부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은 국가어항 지정 시 국가균형적 발전을 고려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어항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내륙 어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내수면 어항 지정 및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⁶⁾(10년 주기 수립, 5년 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내수면 어업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어선 계류시설 및 부유식 수상구조물 정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신규 국가어항 지정에 대해서는 기존 바다에 위치한 어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바, 국가어항 지정시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6)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5.12.) p.18

VI. 전략별 추진과제

[1] 어촌 경제 활성화

1. 어촌어항 거점 개발 중 주요내용

○(국가어항 신규 지정) '24년 선정된 국가어항 신규 예비대상항개발추진, 수산업 환경변화 등을 고려한 기존 국가어항 개발방안마련

- (예비대상항) '24년 지정된 예비대상항*의 기본설계 추진('26년~)

* 삽진항, 울포항, 가력항, 대명항, 북신항, 생깁항, 방아머리항, 전곡·제부항, 하리항, 유계항

○ (내수면 어업시설 개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내수면의 열악한어업 기반 시설 확충* 등 검토

* 어선 계류시설 및 부유식 수상구조물 등 기본시설 정비 중심

- 내수면 어촌은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품 제조·가공, 소규모 어업 체험·관광 등 내륙어촌 활성화 방안 검토

- 둘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7)은 어항지정시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어선의 안전수용률,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어항지정의 기준을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초조사 및 경제성 분석 등을 면밀히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내수면 어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어항 지정의 기준(시행규칙 별표1) >

	국가어항	
지정 기준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항·포구일 것	
	가. 외래어선 이용빈도(연간)	110회 이상
	나. 어선 이용빈도(연간)	5,000회 이상
		2,500회 이상이고 아래 2항목 이상 충족할 것
	1) 배후인구(어항배후 읍·면·동의 인구를 말한다): 광역시는 4만명 이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4천명 이상	
	2) 어항방문객: 연간 40만명 이상	
지정 기준	3) 주변 양식어장의 규모: 1,100ha 이상	
	4)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이 있을 것	
	5)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선·도선의 운항 횟수: 주당 14회 이상	
	2. 도서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항목 중 50% 이상을 충족할 것	

7)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10조(어항지정의 절차 및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어항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어항(이하 “지정대상어항”이라 한다) 및 그 인근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2. 어선의 안전수용률(기상악화시 해당 어항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해당 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 현황 및 관광 현황
4. 어항 지정시의 경제성 분석

②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해안에 위치한 어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편중되어 내수면 어항의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내수면 국가어항 개발과 관련하여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⁸⁾.

문 의 처

02)6788-5419

8)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국가어항 개발 절차도

